



데스크  
칼럼 \_

##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 정부 / 시설자금지원 등 대책 마련 나서야 업계 / 전면시행 앞두고 시설 개보수 서둘러야

본지 김한웅 부장

**지난달**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가금류 포장유통 의무화'와 관련 시행령이 공포됐다.

1차적으로 일일 작업량이 8만수 이상인 상위 업체들을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닭고기 포장유통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시행령·시행규칙(안)중 시행령에는 부칙으로 8만수 이상의 도계장은 2007년 1월 1일부터 8만수이하 및 가공장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본법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부칙을 삭제하고 일단 8만수이상 작업장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8만수 이상의 도계장들도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 시기에 맞춰 정상적으로 포장작업을 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차 포장유통 대상 도계장 중 일부는 부분적이거나 어느 정도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냉각장치, 포장기계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차 시행에 예상되는 나머지 작업장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상황으로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준비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시행시기가 확정된 이후 너무 기간이 촉박한 데다가 상당수의 업체가 '가금류 포장유통 의무화'로 파생될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절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법 제정이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

한 충분한 사전홍보가 있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되고 법부터 만들어진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농림부 해당부처에서는 포장유통 미 이행에 대한 단속을 일정기간 유보시키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선행업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벌여 줄지는 현재로서 유보적이다.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도계·도압장을 비롯 가공장(수입육 가공장 포함), 중간유통상 등 닭고기 유통관련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금류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시급한 실정임은 분명하다.

1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상위업체들이야 어떤 식이라도 최대한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시기에 맞추려 노력하겠지만 그 외의 업체들에게는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포장유통 의무화'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지원자금 중에 '도축장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항목이 있다고는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가금류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 자체를 '강 건너 불 보듯' 한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사전준비가 안돼 있어 정책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닭고기는 타 육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육질이 연약해 쉽게 부패(미생물)에 노출돼 있는 관계로 철저한 사전 작업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타 육류와 같이 단순 포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계장 자체의 냉각시설 확보, 콜드체인 시스템 확보가 먼저 수립돼야 포장유통이 가능

해진다.

닭고기 포장육의 경우 6시간 이내에 닭 심부 온도를 2℃ 이하로 끌어내려야 하며 반출시까지 5℃를 유지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포장을 하기 위한 공간 확보, 새로운 냉각시스템 설치 등 현행 시설을 대폭 개보수하거나 이것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단순히 포장기계의 도입뿐만이 아니라 도계 시설의 전면적인 개보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대다수 도계장들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해결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닭고기의 위생,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닭고기 위생을 나쁜 쪽으로 더욱 악화시키는 결론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닭고기 처리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도계장 시설 보수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업체들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최종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당초 농림부의 계획(안)대로 8만수 이하의 도계장을 포함, 가공장, 중간유통상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가금류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간이 결코 넉넉치 않다는 점이다. 시간상으로는 15개월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규 시설도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을 경우 이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닭고기 관련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관련업계도 닭고기 포장유통 전면 시행에 앞서 파생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포장유통 의무화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